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720 발의연월일: 2023. 6. 16.

발 의 자: 안규백·강대식·강득구

최인호 · 임종성 · 위성곤

박덕흠 • 이상헌 • 김수흥

기동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에서는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피의자 신 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 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8,797 건에 달함에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하여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.04%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아울러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위 기간 개최한 47건의 회의도 범행 및 수사 당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기준이 자의적으 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개결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비판이제기되고 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살인, 중상해, 성폭력, 인신매매,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,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살인죄, 중상해죄, 성폭력범죄,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- 라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.

- 마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·좌측·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·보관함(안 제4조제4항).
- 바.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, 선량한 풍속, 공공의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(안 제6조).
- 사.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 상을 청구할 수 있음(안 제7조제1항).

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 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에서 "특정범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 - 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7조(내란), 제88조(내란목 적의 살인) 및 제89조(미수범)의 죄
 - 2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[살인·존속살해(尊屬殺害)], 제253조[위계(僞計)등에 의한 촉탁살인(囑託殺人)등] 및 제254조(미수범. 다만,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 의 죄
 - 3.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(중상해, 존속 중상해), 제258조의2(특수상해), 제259조(상해치사), 제261조(특수폭행) 및 262조(폭행치사상)의 죄
 - 4. 「형법」 제2편제31장 약취(略取), 유인(誘引)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(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
- 5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(강간등 상해 · 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2(유사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·준 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 및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
- 6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, 제305조및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죄
- 7. 「형법」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(강도), 제334 조(특수강도), 제335조(준강도), 제336조(인질강도), 제337조(강도상 해·치상), 제338조(강도살인·치사), 제339조(강도강간), 제340조 (해상강도), 제341조(상습범) 및 제342조(미수범. 다만,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- 8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1 조까지의 죄
- 9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단체 등의 구성·활동) 의 죄

-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범죄로 본다.
- 제3조(신상정보 공개대상자) 이 법은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(이하 "공개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신상정보의 공개) ①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 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(이하 "신상정보"라 한다)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개대상자가 「대한 민국헌법」 제27조제4항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275조의2에 따라 유 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성명
 - 2. 나이
 - 3. 주소 및 실제거주지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)
 - 4. 직업 및 직장
 - 5. 사진
 -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.
 -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상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

- ·좌측·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 으로 저장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공개기간)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신상정보 공개의 예외)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의 신 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, 선량한 풍속,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 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 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, 구체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무죄판결과 보상) ①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 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 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 절차,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 다.